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7월 1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4년 7월 4일

라. 상정일자 : 2005년 7월 8일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

나. 제안이유

- 노후되고 협소한 무을보건지소를 농어촌특별회계 사업으로 무을면 송삼리 808-2번지에 이전신축 코자함.
- 1993년 출연당시 구미오성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2001년 3월 재단에 일부를 양여(잡종지,대지)하고 남은 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재단의 농지소유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시에서 보존·관리한 재산으로 2005년 2월 재단 측의 매각요구에 따라 재산의 임대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 보다 현금 출연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어 매각코자 함.

다. 주요내용

1) 취득재산

【선산보건소 소관】

(무을보건지소 이전신축)

- 건 물 : 1동 337.2 m^2 (지상 2층)
- 예정가격 : 543,680천원(건물신축 예산)

2) 처분재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구미오성문화재단 잔여 농지매각)

- 토 지 : 20필지 21,878 m^2 (6,618평)
- 예정가격 : 325,726천원 (공시지가)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5조
-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조 택 환

-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임.
- 따라서, 무을보건지소 이전신축 1동과, 구미오성문화재단 잔여 농지인 토지 20필지를 매각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